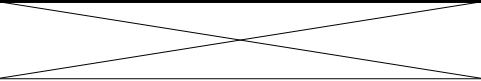


반 환 청 구 서

공고번호		접수일자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연 락 처	
반환주소	(우편번호 □□□□□)		
반환요구 서류	1. 2. 3.		
반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등기우편(우편요금 착불), <input type="checkbox"/> 등기우편(우편요금을 선 계좌이체)		
<p>「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 구 인 (서명)</p> <p>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p>			
공 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